

#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

## 工業所有權制度的 紙上分析

- …… 工業所有權制度的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? 모든 紛爭……○
- ……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. ……………○
- ……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,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……○
- ……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. ……………○
- ……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? 이에……○
- ……本誌는 「判例研究」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……○
- ……모아 分析해 보았다. ……………<編輯者註>……○

### ◎ 第 17 回

〈前號에서 계속〉

### 商品の 普通名稱

區分 事件番號	判決(審決)日 (結果)	名 稱	適用法條文 (類型別)
79後 56	80. 4. 8 (還 送)	第13類 비누와 洗劑	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 〔性質表示(品 質)〕
77抗告(결) 570 (出願 76—9670)	79. 5. (不成立)		

本願商標 :

引用商標 :

**멋 장 이**  
**MUTJANG.E**

(出願 76—9670)

#### ● 判決內容

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에서 (出願 76—9670) 그 商品의 產地·品質·原材料·效能·用途·數量·形狀·價格…… 등을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包裝單으로 된 商標는 登錄을 받을 수 없다고 規定한 趣

旨는 商品의 品質·效能·形狀 등이 需要者의 社會 通念上 當該商品에 一般으로 갖고 있는 共通된 品質·效能·形狀 등으로만 表現하는 商標를 特定人에게 獨占的으로 使用케 할 수 없다는 公益上의 要請과 他人의 商品과의 關係에 있어 識別하기 어렵다는 點에 그 理由가 있다고 할 것인 바(當院 79.12.11 宣告 78後18 判決參照), 本願商標 “멋장이”가 指定商品인 第13類 비누와 洗劑와의 關係에 있어, 需要者의 社會通念上 그 商品의 形狀 및 性質이 品位있고 우아하다거나 그 商品을 使用하는 사람을 멋장이라는 抽象的인 뜻을 內包한다 할지라도 需要者間에 “멋장이”란 말이 비누 洗劑의 效能, 形狀 등을 一般의 共通的으로 表現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, 記錄에 의하여도 위 指定商品에 관하여 業者間에 本願商標 “멋장이”를 使用하려는 事情을 엿볼 수 없으니, 本願商標가 指定商品의 去來上 識別力을 認定하기 어렵다거나 그 獨占使用이 公益을 해치는 것이 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, 原審決은 “멋장이”란 뜻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.

區分 事件番號	判決(審決)日 (結果)	名 稱	適用法條文 (類型別)
79후 93	80. 5. 27 (棄 却)	(第38類) 측이음, 마시 켜 품립	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 〔性質表示(原 材料, 형상)〕
78抗告(결) 454 (出願 76—8151)	79. 11. 5 (不成立)		

本願商標 :

引用商標 :

# STEELFLEX

(出願 76-8151)

### ● 判決內容

“STEELLEX”의 “STEEL”은 鋼鐵을, FLEX는 “구부러지다”를 뜻하므로 이를 指定商品과 關聯지워 불매 “鋼鐵로 된 구부러진 축이음” 또는 “鋼鐵로 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”을 연상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指定商品의 原材料 및 形象을 表示한 用語에 불과하므로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의 拒絕事由에 該當된다 하며 登錄을 拒絕한 原査定은 正當하다고 原審은 判斷하였는데,

本件 出願商標는 第38類의 産業機械機具, 動力機械機具(電動機除外)의 數種을 그 指定商品으로 하고 있는바 一般의 産業 또는 動力의 機械機具는 鋼鐵을 主材料로 한 附屬品으로 組立되고 있고 또 그 附屬品의 形態는 구부러진 것과 같은 것 등 여러가지 形態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비록 英文上 “STEELFLEX”라는 單語가 固定的 意味를 가지는 한개의 單語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鋼鐵을 意味하는 “STEEL”과 구부러진다는 뜻을 가진 “FLEX”라는 單語를 複合할 때 一般의 産業 또는 動力의 機械·機具의 原材料나 形態로 認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本願商標는 其他 商品과의 識別力에 관한 特別顯著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趣旨로 判斷한 原審은 正當하다.

區分 事件番號	判決(審決)日 (結果)	名 稱	適用法條文 (類型別)
78호 29	79. 2. 27 (棄 却)	(52類) 言語教育用 테이프	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· 第8條 第1項 第7號 〔商品의 性質 (用途)表示 및 自他商品의 識別力 없음〕
77抗告(절) 159 (75-2575)	78. 3. 30 (不成立)		

本願商標 :

引用商標 :

# LINGUA TAPE

(出願 75-2575)

### ● 判決內容

原審決 理由에서 本願商標 “LINGUA TAPE”는 “言語테이프”라는 뜻을 表示하는 것이고, 本原商標의 指定商品은 “教育用 言語코오스의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”로서 그 自體가 言語테이프를 使用케 된다 함이 分明한 것이므로 本願商標는 곧 그 指定商品에 使用된다는 뜻의 用途表示의 性質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므로 言語教育용 테이프라는 같은 用途의 自他商品을 識別할 수 있는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는 趣旨에서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 및 第7號에 該當되어 登錄될 수 없는 商標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首肯되어 正當하다 할 것이고, 抗告審判請求人이 本願商標는 英國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에 登錄돼 있다고 提示하고 있는 證據에 對하여 原審決에서 이를 參考事項에 不週하다 하고 이로 因하여 本願商標의 登錄與否가 決定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본다. <계속>

## (案) 本會 發明振興事業(內)

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으나 많은 參與바랍니다.

- ◎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斡旋
- ◎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
- ◎ 優秀發明者, 發明有功者,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
- ◎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
- ◎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
- ◎ 優秀發明의 金融支援 推薦
- 創業資金 支援 推薦(45歲 未滿)
- 企業化資金 投·融資 推薦
- ◎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
- ◎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
- ◎ 企業과 發明家 結緣(申請接受)
-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
- 住所 및 電話番號
- 公告, 登錄番號 및 日字
- 發明考案의 명칭을 지어 보낼 것.

※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(557-1077~8)로 문의 바랍니다.